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9. 12.(월) 11:00<br>9. 13.(화) 조간 | 배포 일시 | 2022. 9. 8.(목) 16:00   |
| 담당 부서 | 농업정책국<br>농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이승한 (044-201-173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안정모 (044-201-1735) |

##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

-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, 농업법인·외국인·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 
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·이용 현황 점검 -

### 주요 내용

- ☐ (대상농지)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, 농업법인·외국인·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, 최근 5년간('17~'21)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, 농지 소재지 시·군·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·군·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('17~'21) 취득한 농지, 최근 5년간('17~'21) 공유로 취득된 농지
- ☐ (조사내용)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
- ☐ (조사기간)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☐ (후속조치) 농지 처분의무 부과,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.

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·거래·이용·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,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.
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, 농업법인·외국인·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('17~'21)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, 농지 소재지 시·군·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·군·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('17~'21) 취득한 농지, 최근 5년간('17~'21)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,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.

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.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(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)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.

\*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, 농업법인 실태조사(9.1.~12.31.)를 통해 조사

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,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.

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“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「농지법」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,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